

[성년후견제도] 대법원 성년후견제도 안내 보도자료



○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개인별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으나,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 의사와 의지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성년후견제도는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장래를 대비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일률적으로 제한되고 후견인 역시 법정순위에 따라 일률적으

로 정해지며 친족회가 후견인에 대한 감독사무를 맡았던 한정치산·금치산제도와 달리, 성  
 년후견제도에서는 법원이 개별 사안마다 피후견인의 능력을 살펴 후견인·후견감독인과  
 후견의 범위를 정하고 후견인 등에 대한 감독사무까지 담당함

○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차이점

내 용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성년후견제도
제도	본질	가족제도	복지제도
	목적	재산관리에 중점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중점
	방식	능력박탈(제한)	능력지원
피후견인	사유	심신상실/심신미약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종류	금치산/한정치산	성년/한정/특정/임의 후견
후견인	자격	친족	친족 또는 제3자(법인 포함)
	선임방식	법정되어 있음	법원의 직권선임
	감독기관	친족회	법원(후견감독인)
법원	역할	능력박탈(제한)의 선언	후견인 선임과 감독
	성격	사법적(司法的)	행정적(行政的)

상속분쟁, 성년후견, 심판소송, 기업법무, 벤처기업, 계약분쟁, 손해배상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

● 성년후견제도의 유형 및 비교표

내 용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한정후견(감독)인, 특별임의사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한정후견(감독)인, 특별임의사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임의사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사단체의 장 (※ 임의후견개시청구요건감독임의청구권자)
후견개시시점	성년후견개시심판 확정 시	한정후견개시심판 확정 시	특정후견심판 확정 시	임의후견감독인선임심판 시
공시방법	법원의 등기축탁 → 후견등기부예기록	법원의 등기축탁 → 후견등기부예기록	법원의 등기축탁 → 후견등기부예기록	당사자의 등기신청 / 법원의 등기축탁 → 후견등기부예기록
본인의 행위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 행위무능력자</li> <li>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민법 제10조 제2항), 일상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 못함(같은 조 제4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 행위능력자</li> <li>다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제한됨(민법 제13조)</li> <li>이 경우도 일상품 구입 등의 경우에는 취소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위능력자</li> <li>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위능력자</li> <li>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음</li> </ul>

내 용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후견인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년후견인은 필수적이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li> <li>•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민법 제938조 제1항)</li> <li>• 다만, 가정법원은 위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민법 제938조 제2, 3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정후견인은 필수적이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li> <li>•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 취소 가능</li> <li>•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민법 제959조의4), 그 범위에서 대리권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후견인의 선임은 임의적</li> <li>• 가정법원의 기간이나 범위를 정한 대리권 수여심판에 의하여 대리권 가짐(민법 제959조의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계약에서 정함</li> </ul>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